

보상위원회운영규정	제정일자	2024.12.01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동국제약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고 한다)의 이사회 내에 설치된 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.

- ① 임원의 보상정책 결정
- ②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
- ③ 장기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임원성과지표의 평가 결정
- ④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
제 2 장 구 성

보상위원회운영규정	제정일자	2024.12.01
---	--	--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3항에 의거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7조 (소집절차 등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, 안건, 장소 등을 정하여 개최일 3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경우 당해

보상위원회운영규정	제정일자	2024.12.01
---	--	--

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④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 ⑤ 위원회의 검토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도 제 3 항 내지 제 4 항을 준용한다. 제8조 (검토 및 토의사항 등) ① 등기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② 등기이사 보상 체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보수 관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9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② 외부인사의 회의 출석 및 관련 의견 진술 및 청취 ③ 제 1 호 및 제 2 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것도 포함한다 ②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심사 후 재결의 할 수 있다.
--

